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6075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중민

피고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운

변론 종결2021. 5. 26.

판결 선고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4,120,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경상북도지사는 1997. 9. 6.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B 일원 376,412m²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경상북도 고시 C)하였다. 그에 따라 구미시장은 1997. 9. 11. 이 사건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 중 권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구미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구미시 고시 D)하였다.

2) E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E토지조합'이라 한다)은 2004. 6. 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3) 원고는 2008. 4.경 E토지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0. 1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구미시장은 2010. 4.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면적을 37,370m²에서 12,029m²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경 학교용지가 12,028.8m²로 기재된 환지계획(변경)인가검토서, 2010. 12.경 학교용지가 12,028.8m²로 기재된 환지처분서가 각 작성되었다.

2) E토지조합은 2010. 12. 20. 원고와 사이에 구미시 F 학교용지 12,028.8m²(당시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학교용지의 매수인으로 원고를 등재하였다.

3) E토지조합은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은 후 2010. 12. 21.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2011. 1. 27.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선행 소송 및 결과

1) 피고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14가합258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날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1.경 E토지조합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학교용지의 대금채권을 위 조합으로부터 양수하고 위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2015. 5. 18. 위 법원 2015가합15330호로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8.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피고 모두 항소하였다.

2) 한편 구미교육지원청장은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6. 1. 27.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확정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로서 1,7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6나20580호(본소), 2016나20597(반소) 사건에서, 피고는 본소 청구를 "이 사건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8,983,62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본소를 각하하면서 원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는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중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 다음날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학교용지

감정가격 내지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취득대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 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취득대가로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조성원가 상당인 1,728,983,626원(12,028.8m² x 143,7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28,983,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한 1,700,000,000원을 공제한 원금 469,75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피고 모두 대법원에 2017다244382호(본소), 2017다244399(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재다5158호로 위 대법원 2017다244399(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관련 소송 및 결과

1) E토지조합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55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정하였을 뿐 그 대가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조성원가 등 다른 산정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토지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학교용지 대금 양도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5,473,104,000원) 등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피고가 A에게 이미 지급한 1,728,983,62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토지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학교용지 대금 양도계약은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E토지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E토지조합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누4852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2000. 1. 28. 법률 제6252호, 2000. 7. 1. 시행,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그 조성원가인 1,728,983,626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학교교지의 취득대금을 조성원가 상당액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위헌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27조에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을 부동산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학교용지 등 확보에 관한 특례법도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도시계획결정은 국가에서 대략의 틀을 정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시행자 지정을 받고 환지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만연히 도시계획결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이 위헌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1) 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대가로 조성원가인 1,728,983,626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인 감정평가액 5,473,104,000원과의 차액 3,744,120,37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744,120,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선형소송에서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취득대가가 조성원가 상당의 1,728,983,626원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와 반대로 감정가격 상당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선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환지계획)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7-12-13>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4조(보류지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지정의 효과)

④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에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효과)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2000. 7. 1.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252호, 2000.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4.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위헌 여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교교지의 대가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전체적인 입법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본질 등에 비추어 학교교지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 토지가격에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해석가능하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학교교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공용지 중 학교교지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시키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감보율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 역시 주요한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학교교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로 인하여 환지가 감보되지만 이러한 감보는 구획정리사업 결과 대지의 효용이 증가하여 환지의 가격이 증가하는 것, 즉 개발이익에 의하여 보상되는 점, 단순히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 역시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교지 취득대금이 그 증가된 효용가치가 배제된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학교교지의 조성비용을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 상당액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확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1)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 법에 흡수됨으로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규정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학교부지 취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 종전 법률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취지와 입법 목적, 사회실정,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도시계획결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시행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시행 이후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에 학교용지 등 취득대금산정에 관하여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재정비 과정에서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법과 신법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이에 따라 법률 폐지 당시 도시계획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업과 되지 않은 사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이미 계획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학교용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 종전 법률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그 충돌하는 가치를 형량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등의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판력 저촉 여부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 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그 취득대가로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조성원가 상당인 1,728,983,6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지급한 17억 원을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학교용지의 정당한 취득대가가 감정평가액인 5,473,104,000원임을 전제로 위 1,728,983,626원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28,983,626원의 학교용지 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한 선행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진표

판사김주현

판사구하경

1) 원고는 이 법원에 2020카기5054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6. 23. 기각결정을 하였다.